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용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9.

발 의 자 : 이용선·정태호·이주희
박해철·박지혜·윤후덕
송재봉·장종태·이병진
김승원·임미애·채현일
박용갑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·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.

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).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과징금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학원을 설립·운영하는 행위
2.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하는 행위
3.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개인과의 교습을 하는 행위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

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2(과징금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u> <u>1.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학원을 설립·운영하는 행위</u> <u>2.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하는 행위</u> <u>3.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</u>

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행위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